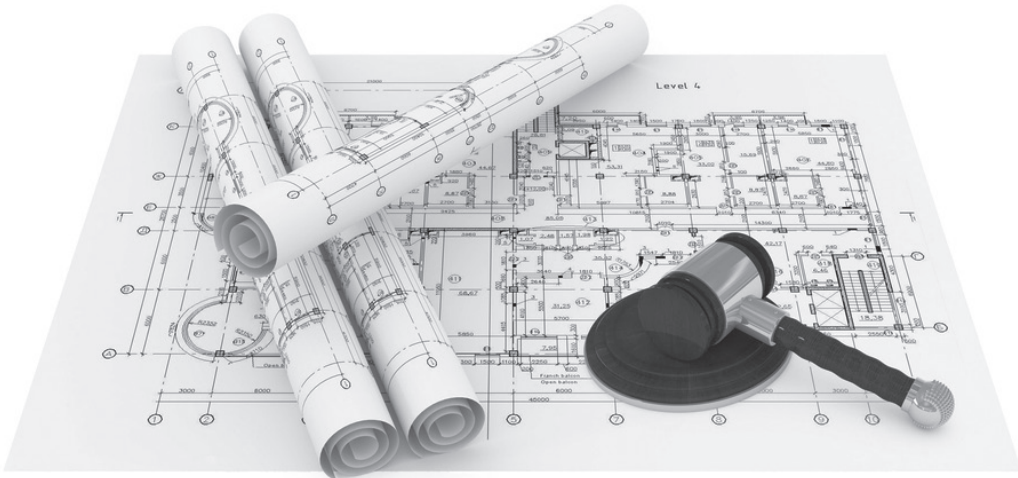


표준시장단가(실적공사비) 제도 관련 계약예규 개정

- 국가공사 3월 1일, 지방공사 3월 9일 예정가격 작성 사업부터 적용 -



국가 발주 공사는 3월 1일,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는 3월 9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사업부터 표준시장단가 제도가 적용된다.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이상일)를 비롯한 건설관련 유관단체에서는 실적공사비의 불합리한 공사비 산정 기준 및 운영관행에 대해 폐지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정부는 이같은 건의를 받아들여 지난해 12월 17일 실적공사비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개선안을 발표했으며, 이번 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개선됐다. 이에 따라 실적공사비 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공공공사비 산정 방식인 표준시장단가 제도가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예규를, 행정자치부는 지방계약예규를 개정해 각각 지난 3월 1일과 3월 5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각 개정 계약예규는 실적공사비의 명칭이 표준시장단가로 변경됨에 따라 용어를 수정했고, 실적공사비 제도 적용배제 범위를 신설했다. 또한 적용배제 공사범위는 300억원 미만 공사 중 100억원 미만 공사는 실적공사비(표준시장단가) 적용을 폐지하고, 100억원 이상부터 300억원 미만 공사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정부는 100억원~300억원 공사에 대한 '실적공사비 적용 배제제도' 연장 여부를 2016년 하반기에 실적공사비 현실화 수준 등을 평가하여 재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표준시장단가 제도는 공사비를 산정할 때 현행 계약단가 외에도 시공단가와 입찰단가 등 다양한 시장 거래가격을 반영하는 제도로, 지난 1월 22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확정된 '공공건설 공사비 적정성 제고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공공공사비 예정가격 산출방식의 하나인 실적공사비제도를 개선한 것이다.[편집자주]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개정 주요내용

1. 개정내용

■ 개정 계약예규

- 예정가격작성기준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
- 공사계약 일반조건

■ 공포 및 시행일 : 2015. 3. 1

- 예정가격 작성기준은 2015. 3. 1 이후 동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사업부터 적용

■ 주요 개정내용

- 실적공사비의 명칭 변경에 따라 용어 수정
 - 실적공사비 → 표준시장단가
- 실적공사비 제도 적용배제 범위 신설
 -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실적공사비 적용 배제
 - 100억원~300억원 공사에 대해서는 2016.12.31까지 실적공사비 적용 배제
 - ※ 2016년 하반기, 실적공사비 현실화 수준 등을 평가하여 100억원~300억원 공사에 대한 “실적공사비 적용 배제제도” 연장여부를 재검토할 예정

2. 신규조문대비표

■ 예정가격작성기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의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및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전문가격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의 등록 등에 있어 적용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표준시장단가 _____ _____ _____.
제3장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제3장 표준시장단가 _____
제37조(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의 산정)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은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37조(표준시장단가 _____) ① 표준시장단가 _____ _____ _____.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②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에는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3조(총괄집계표의 작성) 계약담당공무원이 실적공사비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예정가격을 직접 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및 부가가치세로 구분하여 별표6의 총괄집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3조(총괄집계표의 작성) ————— 표준시장 단가 ————— ————— ————— —————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7조 및 제4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최초로 이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표준시장단가 적용에 관한 특례) 제37조 제2항의 개정규정 중 “100억원”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300억원”으로 본다.

■ 정부입찰 · 계약집행기준

현 행	개 정 (안)
제67조(품목조정율)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64조 제1항제1호에 의한 품목조정율 산출시에는 시행규칙 제74조제1항 내지 제3항에 정한 바에 의하되,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종의 경우에는 입찰당시(또는 직전조정기준일당시)의 실적공사비 단가와 물가변동당시의 실적공사비 단가를 비교하여 등락율을 산출한다. ② (생 략)	제67조(품목조정율) ————— 표준시장 단가 ————— 표준시장 단가 ————— 표준시장 단가 ————— 표준시장 단가 ② (현행과 같음)
제68조(지수조정율 및 용어의 정의) 시행령 제64조제1항 제2호에 의한 지수조정율 산출시에는 이 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목군”이라 함은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중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구성하는 제비목을 노무비, 기계경비, 실적공사비 또는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분류지수 및 수입물가지수표상의 품류에 따라 입찰시점(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계약담당공무원이 다음 각목의 예와 같이 분류한 비목을 말하며 이하 “A, B, C, D, E, F, G, H, I, J, K, L, M, Z”로 한다.	제68조(지수조정율 및 용어의 정의) ————— ————— ————— ————— 1. ————— ————— 표준시장단가 ————— ————— ————— —————

현 행	개 정 (안)
<p>가.~바. (생 략)</p> <p>사. G : 실적공사비(공사에 한하며, G1 : 토목부문, G2 : 건축부문, G3 : 기계설비부문, G4 : 전기부문으로 구분하며, 일부공종에 대하여 재료비·노무비·경비중 2개이상 비목의 합계액을 견적받아 공사비에 반영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부분(G1, G2, G3, G4)의 실적공사비에 포함한다. 이하 같다.)</p> <p>아. ~하. (생 략)</p> <p>2. (생 략)</p> <p>3. “지수 등”이라 함은 다음 각목을 말한다.</p> <p>가. A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조사·공표된 해당직종의 평균치를, B에 대하여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전체기종에 대한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해당공사에 투입된 기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를, “C, D, E, F”에 대하여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표 및 수입물가지수표상 해당 품류에 해당하는 지수를, G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G1, G2, G3, G4) 실적공사비 단가의 전체 평균치를 말하며, 이하 기준시점인 입찰시점의 지수 등은 각각 “A0, B0, C0, D0, E0, F0, G0”로, 비교시점인 물가변동시점의 지수 등은 각각 “A1, B1, C1, D1, E1, F1, G1”으로 표시하되 통계월보상의 지수는 매월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각 비목군의 지수상승율을 산출한다.</p> <p>나. “H, I”에 대하여는 다음 공식에 의하여 산출하며, “J, K, L, M”에 대하여는 “H” 산출방식을 준용한다. $H0 = A0 \times \text{입찰시 산재보험료율}$ $H1 = A1 \times \text{조정기준일 당시 산재보험료율}$ $I0 = \text{변동전(직접노무비계수 + 재료비계수 + 실적공사비계수)} \times \text{입찰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 변동전 재료비계수=c + d + e + f $I1 = \text{변동후(직접노무비계수 + 재료비계수 + 실적공사비계수)} \times \text{조정기준일당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 변동후 계수=변동전계수×지수변동율</p> <p>다. (생 략)</p>	<p>가. ~ 바. (현행과 같음)</p> <p>사. G : 표준시장단가(_____ .)</p> <p style="text-align: center;">표준시장단가_____.)</p> <p>아. ~하.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3. _____ .</p> <p>가. -</p> <p style="text-align: center;">_____ 표준시장단가 _____</p> <p>나. “H, I”에 대하여는 다음 공식에 의하여 산출하며, “J, K, L, M”에 대하여는 “H” 산출방식을 준용한다. $H0 = A0 \times \text{입찰시 산재보험료율}$ $H1 = A1 \times \text{조정기준일 당시 산재보험료율}$ $I0 = \text{_____ 표준시장단가 _____}$ $I1 = \text{_____ 표준시장단가 _____}$</p> <p>다. (현행과 같음)</p>
<p>제70조(계약금액의 조정) ①~⑤ (생 략)</p> <p>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68조제3호에 의한 각 중앙관서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G1, G2, G3, G4) 실적공사비 단가의 전체 평균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p>	<p>제70조(계약금액의 조정) ①~⑤ (현행과 같음)</p> <p>⑥ _____ 표 _____ 표준시장단가 _____ .</p>

현 행	개 정 (안)
<p>1.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의 실적공사비 지수는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각 중앙관서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 실적공사비 단가의 전체 평균치</p> <p>2. 물가변동시점의 실적공사비 지수는 조정기준일 중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공종별 실적공사비 단가에 해당하는 실적공사비 단가만의 전체 평균치</p> <p>3.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에 발표되어 있던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이 물가변동시점에 삭제된 경우에는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공종별 실적공사비 단가의 전체 평균치 산정 시 물가변동시점에 삭제된 공종을 제외함</p> <p>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부문 실적공사비(G2)의 전체평균치 산정시 건설교통부장관이 발표한 실적공사비 공종 중 타워크레인 운반비(8ton, 10ton, 12ton)와 타워크레인 임대료(8ton, 10ton, 12ton)는 발표된 실적단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단위를 보정하여 산정한 단가를 반영한다.</p> <p>1. 2. (생략)</p>	<p>1. _____ 표준시장단가 _____ 표준시장 단가 _____</p> <p>2. _____ 표준시장단가 _____ 표준시장 단가 _____ 표준시장 단가 _____</p> <p>3. _____ 표준시장단가 _____ 표준시장단가 _____</p> <p>⑦ _____ 표준시장단가 _____ 국토 _____ 표준시장단가 _____ 단가 _____.</p> <p>1. 2. (현행과 같음)</p>
	<p>〈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p>

■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

현 행	개 정 (안)
<p>제6조(현장설명시 교부서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공사 현장설명에 참가하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p> <p>1. ~ 3. (생략)</p> <p>4. 실적공사비를 적용한 세부공종 및 실적공사비 단가</p> <p>5. ~ 6. (생략)</p> <p>② (생략)</p>	<p>제6조(현장설명시 교부서류) ① _____ _____.</p> <p>1. ~ 3. (현행과 같음)</p> <p>4. 표준시장단가 _____ 표준시장단가</p> <p>5. ~ 6.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8조(부적정공종의 판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종의 입찰금액이 해당 공종에 대한 발주기관이 작성한 금액의 100분의 10(제7조제2항에 따라 범위를 조정할 경우 조정된 율)이상을 초과하거나 해당 공종의 공종기준금액 보다 100분의 20이상 낮은 경우에 해당 공종의 입찰금액이 부적정한 것으로 판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공종의 입찰금액을 부적정한 것으로 판정한다.</p> <p>1. ~ 2. (생략)</p>	<p>제8조(부적정공종의 판정) ①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p> <p>1. ~ 2.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3. 공종의 전체 또는 일부 세부공종에 대하여 실적공사비 단가가 적용된 경우로서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출한 산출내역서상 실적공사비 단가에 의한 공종별 또는 일부 세부공종별 입찰금액이 발주기관이 작성한 산출내역서상의 실적공사비 단가에 의한 금액보다 1000분의 30이상 낮은 경우</p> <p>4. ~ 6. (생략)</p> <p>② ~ ④ (생략)</p>	<p>3. _____ 표준시장단가 _____</p> <p>_____ 표준시장단가 _____</p> <p>_____ 표준시장단가 _____</p> <p>4. ~ 6. (현행과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15조(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 결정) 계약담당공무원은 최저가로 입찰한 자부터 순차적으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에서 제외한다.</p> <p>1. ~ 2. (생략)</p> <p>3. 공종의 전체 또는 일부 세부공종에 대하여 실적공사비 단가가 적용된 경우로서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출한 산출내역서상 실적공사비 단가에 의한 공종별 또는 일부 세부공종별 입찰금액이 발주기관이 작성한 산출내역서상의 실적공사비 단가에 의한 금액보다 1000분의 30이상 낮은 경우</p> <p>4. ~ 6. (생략)</p>	<p>제15조(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 결정) _____</p> <p>_____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_____ 표준시장단가 _____</p> <p>_____ 표준시장단가 _____</p> <p>_____ 표준시장단가 _____</p> <p>4. ~ 6. (현행과 같음)</p>
<p>〈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p>	

■ 공사계약 일반조건

현 행	개 정 (안)
<p>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p> <p>① ~ ② (생략)</p> <p>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p> <p>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로 한다.</p> <p>2. 신규비목의 단가는 실적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로 한다.</p> <p>④ ~ ⑩ (생략)</p>	<p>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_____ 표준시장단가 _____</p> <p>_____ .</p> <p>1. _____ 표준시장단가 _____</p> <p>_____ 표준시장단가 _____ .</p> <p>2. _____ 표준시장단가 _____</p> <p>_____ 표준시장단가 _____ .</p> <p>④ ~ ⑩ (현행과 같음)</p>
<p>〈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p>	

지방계약법 계약예규 개정 주요내용

1. 개정내용

■ 개정 계약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공포일 : 2015. 3. 5, 시행일 : 2015. 3. 9

- 예정가격 작성기준은 2015. 3. 9 이후 동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사업부터 적용

■ 주요 개정내용

- 실적공사비 제도 적용배제 범위 신설

-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실적공사비 적용 배제

- 100억원~300억원 공사에 대해서는 2016.12.31까지 실적공사비 적용 배제

※ 100억 원 이상부터 300억 원 미만 사업의 실적공사비 배제 연장 여부는 단가 현실화 수준을 고려하여 2016년 하반기 재검토하여 결정할 계획

2. 신규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2절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2.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가.~다.(생략) 바.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은 시행령 제10조에 의하되, 공사에서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실적공사비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법제3조에 따른 교육기관은 교육감)가 실적공사비 적용대상 공사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1) 시·도와 시·군·구는 시·도지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실적공사비를 적용해야 한다.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산 하기관 등 그밖의 기관도 이를 준용한다.	제2절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2.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가.~다.(현행과 같음) 바.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은 시행령 제10조에 의하되,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에는 실적공사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p>〈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적용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2절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2.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바”항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최초로 이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p> <p>제3조(실적공사비 적용에 관한 특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2절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2.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바”항의 개정규정 중 “100억원”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300억원”으로 본다.</p>